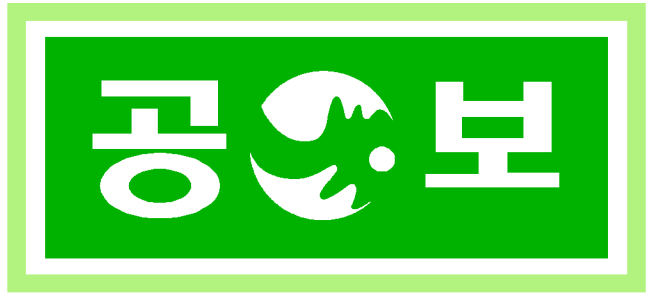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## 제 997 호 2016. 3. 3. (목)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38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3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4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207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208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209호[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221호[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] ..... 17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 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	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38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아랫울동2길 26-14(양정동)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3. 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동명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4	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물동로길 26-14(양정동)	2016-03-03	물동은 법나무가 많아 법나무골이라. 이를 지어졌으므로 오름길도 불충으로 불리고 있고 주민들에 접근이 불편. 물동의 아래쪽을 관측하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2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6-8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길 11(중산동)	2016-03-03	발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3-12-30	
3	울산광역시 북구 시대동 247-2	울산광역시 북구 정화길 92(시래동)	2016-03-03	기존 자연마을인 정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천지구 398 3L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5길 12-6(진정동)	2016-03-03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불산시민이만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 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- 39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12-6(진장동)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별지참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03. 03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12-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9B 3L	2016-03-03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6 - 207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
**울산광역시 복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제1조)  
- ‘제76조’ ⇒ ‘제91조’
- “도로”의 법률정의를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에서 “도로”와 “도로의 부속물”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연 적용되므로 삭제(제2조1항)

**3. 근거법규**

- 「도로법」 제2조 (정의)

**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
- 전화번호 : 052-241-7872, 팩스번호 : 052-241-7869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71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6조”를 “제9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- 208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제2조)
  - ‘제2조제1항제4호’ ⇒ ‘제2조제2호’

**3. 근거법규**

- 「도로법」 제2조 (정의)

**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
- 전화번호 : 052-241-7872, 팩스번호 : 052-241-7869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589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조제1항제4호”를 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도로의 부속물“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「도로법」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생략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조제2호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- 209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라 처리 가능하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○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61조 규정에 따라 처리가능하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조례 폐지

**3. 근거법규**

○ 「도로법」 제61조 (도로의 점용 허가)

**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
- 전화번호 : 052-241-7872, 팩스번호 : 052-241-7869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」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70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221호

##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(어린이보호, 방범, 재난, 불법주정차, 쓰레기투기 단속 등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기관·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3월 3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

1. 사 업 명 : 2016년 도시공원 CCTV 설치
2. 시 행 청 :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
3. 행정예고 내용 : 다목적 CCTV 설치 장소

설치장소	설치지번	설치수량	운영부서	비고
6개소		23		
햇빛공원	중산동 1284-7	4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별빛공원	중산동 1285-7	3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달빛공원	중산동 1286-7	4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기령소공원	매곡동 산1-7	4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화동못수변공원	화봉동 324-3	4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흙골못수변공원	호계동 산35-1	4	안전정보과 (CCTV 통합 관제센터)	

4. 촬영범위 및 시간 : 100M이내 24시간
5. 예고기간 : 2016. 03. 03 . ~ 03. 23. (21일간)

6. 의견제출

-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
- 우 편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공원녹지과
- 전 화 : 052)241-7942
- F A X : 052)241-7939

마.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